#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진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392

발의연월일: 2022. 4. 26.

발 의 자:김진표·고용진·김민철

김병기 · 김병주 · 박성준

설 훈 · 신정훈 · 안규백

최기상 • 한병도 • 홍영표

홍익표 의원(13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질병·심신장애·재난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징집·소집 등의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최대 만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 하지만 국회의원선거·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된 사람의 경우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병역 연기를 할 수 없음.

그런데 최근 「공직선거법」 개정으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피선거권 연령이 기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되면서 병역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고, 당선자의 임기 동안 병역의무 이행 연기가 불가피 함.

이에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에 국회의원선거·지방 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으로 인한 취임을 추가하고 병역 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선자의 공직 업무 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61조제1항).

#### 법률 제 호

##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1조제1항 본문 중 "취업"을 "취업(「공직선거법」 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·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당선자의 의무이행일 연기에 관한 적용례) 제61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,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1조(의무이행일의 연기) ① 병	제61조(의무이행일의 연기) ①
역판정검사, 재병역판정검사,	
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	
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	
병·심신장애·재난 또는 <u>취업</u> 등	<u>취업</u>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	(「공직선거법」 제2조에 따른
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	<u>국회의원선거·지방의회의원 및</u>
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	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
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. 다만,	하여 취임하는 경우를 포함한
병역판정검사 대상자, 재병역판	<u>다)</u>
정검사 대상자, 현역병입영 대	
상자,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	
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	
자의 의무이행일 연기는 30세	
를 초과할 수 없다.	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